

또 죽음 부른 현장실습...홀로 잠수작업 투입된 고교생 참변

잠수 자격증도 없는데...여수서 특성화고교생 요트 밑 따개비 떼다 숨쳐 2인 1조 매뉴얼조차 안 지켜지고 업체 안전관리자는 선박 위에 머물러 끊이지 않는 사고에 정부 안전대책 허사...특성화고노조 진상규명 촉구

직업계고 고교생이 또 다시 일터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졌다.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이나 기술도 없는 어린 10대 고교생이 위험한 일에 내몰리면서 목숨을 잃었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한 현장실습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여수시 웅천천수공원 요트정박장 해상에서 특성화고 3학년인 A(18)군이 현장 실습으로 잠수작업을 하다가 실종됐다. A군은 공원에 상주하는 해양레저 업체 관계자의 신고로 수중 수색에 나선 해경에 의해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군은 여수지역 특성화고 학생으로 지난 9월부터 요트 임대업체인 B업체에 현장실습생으로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요트 청소 등 전반적 관리 업무에 투입됐었고 사고 당일에는 요트선박 바닥에 붙어있는 해조류-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잠수 작업에는 A군 혼자 투입됐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업체측 안전 관리자는 A군 작업 당시 선박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다.

잠수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은 10대 고교생이 홀로 깊은 바다에 투입돼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경찰에서 안전관리자는 "A군이 작업을 하던 중 잠수장비가 헐거워 다시 결착하려고 공기통을 풀었으나 웨이트벨트를 풀지 못해 수중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545조-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다.

진보당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잠수작업'은 18세 미만인 자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용금지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다"면서 "만약 사망 학생의

연령이 이에 해당한다면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안전수칙 매뉴얼 준수 여부를 비롯, 안전교육 및 학교와 업체, 학생 간 체결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등의 준수 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해양레저과 고교생이 바다에 잠수, 요트 밑바닥의 따개비를 떼는 게 전공에 맞는 현장실습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7일 오후 서울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장실습생의 계속되는 죽음, 우리는 분노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어린 10대 고교생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기술과는 무관한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며 단순 부푼처럼 쓰여진 것은 아닌지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잠수기능사 자격증도 없는 현장실습생이 최소한의 안전기준도 없이 홀로 바다에 들어가 전공과 무관한 작업을 하다 숨졌다"면서 "이게 특성화고 고교생을 위한 안전한 학습중심형 현장실습이냐"고 비판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광주 기아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A군은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자동차 공정 중에서도 3D라고 불리던 도장 작업에서 그는 주 70시간 일12시간의 장시간 교대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에는 제주도의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이만호군이 프레스기 조작동으로 사망했다.

정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장 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도입했지만 현장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군 사건이 벌어진 이후 '학습형 현장실습'을 발표했고 기업마다 현장실습 전담 지도자 직원을 두도록 했지만 취업률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받아, 2019년 또다시 현장 실습 제도를 과거로 되돌렸

다.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은 "A군은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날이 훨씬 더 많으며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2018년 교육부장관이 나서 학생들의 안전한 실습처 보장을 위해 학습중심형 현장실습을 하고 안전이 검증된 선도기업을 선정하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수·김창희 기자 chkim@kwangju.co.kr



7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제공>

이경호 광주시의원 직위 상실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선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의원 이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호 광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4월 3일 오후 광주시 북구 모 숲길빌딩에서 교회 2곳 신도 등 18명에게 4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1심에서는 당시 다른 일정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 측이 주최한 교회 신도들 모임을 교인으로 잠시 인사하기 위해 들렀을 뿐 기부행위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1심 주장을 철회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1심 형(刑)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아기 방치 사망 후 냉장고 유기 4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 5년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남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냉장고에 넣어 2년여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홀로 아기 3명을 키우며 아기와 강아지만 집에 놓고 출근하는 등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생신고나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으며 아기가 숨진 후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른 쌍둥이 딸과 7살 큰아들을 잘 씻기지 않고 총 5t 분량에 이르는 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더미 속에 생활하도록 방치했다.

재판부는 "보호·감독해야 할 아기를 유기하고 교육,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로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수용자가 쓴 편지 검열한 교도소...4년간 69건 발송 안했다

광주·목포교도소 5건 미발송

교도소가 인권위의 '인권 침해' 지적에도, 수용자가 쓴 편지를 검열해 임의대로 발송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 수용자의 편지를 검열해 발송을 하지 않은 사례를 들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책을 권고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

영배(서울 성북구갑)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교정시설 내 수용자가 발송한 편지 중 69건이 교도소측 검열을 거쳐 발송되지 않았다.

교도소측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들 편지 대부분이 언론사로 보내지는 것들로, 광주교도소와 목포교도소 5건의 서신 검열을 통해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교도소의 경우 지난 2018년 의료처우 관련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목포교도소는 수용관리 관련 거짓 사실이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발송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특히 지난 2018년 10월, '수용자가 보낸 편지를 교정시설이 미리 보고 발송을 허가하지 않고 서신 내용을 문제 삼아 징벌을 내린 것은 헌법상 통신·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교도소측은 이같은 권고에도, 서신 검열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임의대로 '내용의 거짓 여부'를 판단해 발송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명백한 거짓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교정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횡포'에 휘둘리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거짓사실을 적극 해명하면서 교정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아닌, 섀플 검열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적지 않다.

김영배 의원은 "민주화를 이룬 21세기 현재에도 언론사로 보내지는 내부 실태를 담은 편지를 교도소가 섀플 검열하는 현실이 충격적"이라며 "숨기고 싶은 내용이 과장돼 서술했다고 편지 발송을 불허하는 행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